

의안번호	제 34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월 6일

#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4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월 6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3조 및 제23조의2,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4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와 “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체육회관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-9(방서동)
- 위탁기간 : 2020. 3. 1. ~ 2023. 2. 28. (3년간)
- 수탁자 : 충청북도체육회
- 위탁방법 : 수의계약
- 운영예산 : 시설운영수익으로 충당
- 위탁내용 :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

## 3. 참고사항

-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현황
    - 규모 : 부지 5,314㎡, 건축연면적 4,856.03㎡ (지하2, 지상4)
    - 수탁기관 : 충청북도체육회
- ※ 도체육회 인력 : 24명(사무처장 1, 사무차장 1, 부장 4, 직원 18)

- 운영비 현황 : 시설운영 수익으로 운영비 사용

연 도	세 입 (당해년도수입+전년도이월금)	세 출 (당해년도 운영비)	잔 액 (차년도 이월)
2016	234,301,643원	169,863,280원	64,438,363원
2017	252,403,308원	179,416,160원	72,987,148원
2018	269,818,944원	181,940,360원	87,878,584원

※ 연도별 수입: ('16)201,299,126원 ('17)176,839,945원 ('18)196,831,796원

- 이용현황

구분	면적	용도	비고
계	4,856.03m <sup>2</sup>		
지상4층	705.12m <sup>2</sup>	충북장애인체육회, 회의실 등	체육단체 사무실
지상3층	734.21m <sup>2</sup>	충북체육회, 야구협회, 산악협회 등	
지상2층	733.58m <sup>2</sup>	헬스장, 에어로빅장	도민 편의시설 (생활체육 진흥)
지상1층	1,090.09m <sup>2</sup>	대회의실, 구내식당 등	
지하1층	354.04m <sup>2</sup>	수영장	
지하2층	1,238.99m <sup>2</sup>	수영기계실, 전기실	

- 운영경과

- 1995. 7. 31. 충북체육회관 준공 (총사업비 2,720백만원)  
 ※ 도비 1,500, 교육청 100, 체육회 기금 500, 도민성금 620
- 1995. 9. 30. 기부채납 (충북체육회 → 충청북도)
- 1995. 9. 30. ~ 2008. 2. 28. 충북체육회 무상사용 (12년 5개월)
- 2008. 3. 1. ~ 2011. 2. 28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 (3년)
- 2011. 3. 1. ~ 2014. 2. 28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 (1회)
- 2014. 3. 1. ~ 2017. 2. 28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 (2회)
- 2017. 3. 1. ~ 2020. 2. 28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 (3회)
- 2020. 3. 1. ~ 2023. 2. 28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 (4회 예정)

○ 관계 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(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)
-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(관리 및 위탁운영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# 관계 법령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**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□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

**제23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·제2항·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·제21조에 따라 위탁범위와 위탁기간, 연간 위탁료(사용료 포함)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-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·제8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.

**제23조의2(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)**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.

1. 행정재산의 관리능력
2. 재무구조의 안정성
3.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
4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
5.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

## □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

**제4조(관리 및 위탁운영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운영을 갱신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여야 한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